

## 인터넷과 특허

투자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특허심사 업무는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심사원들은 어떠한 기술과 비즈니스 기술이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인고, 특허기술 자격이 떨어지는지를 알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미국정보기술협회(ITAA: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는 어떻게 인터넷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지에 대한 특허심사관들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전자상거래 특허분쟁이 줄을 잊고 있다. 지난해 Amazon.com은 등록된 고객이 한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one-click”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였는데, Amazon.com은 Barnesandnoble.com사가 비슷한 모델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역경매회사인 Priceline.com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행사이트인 Experia가 “name your price”라는 서비스를 무단 이용하였다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소송하였다.

Coolsavings.com은 Web상의 쿠폰을 발급하고 처리하는 특허기술을 침해당하였다고 몇몇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이벌사인 BrightStreet.com은 피고로서 특허심사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회사중의 하나이다. BrightStreet사가 동시에 유사한 기술을 특허 출원 중이었지만, Coolsavings.com의 특허는 출원중인 기술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특허들에 대한 심사 후 특허가 발급되었다고 BrightStreet사 대표이사인 Scott Wills는 말하고 있다. Coolsavings.com사의 변호사인 C. Lee는 “우리는 우리의 허락 없이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믿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말하고 현재 분쟁조정 및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매일 쉬지 않고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인터넷 특허에 대한 심사는 본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특허출원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6년 20만 건이 올해에는 3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독창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광범위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구명하는 “prior art”가 용이하지 않다. “디지털세계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중의 하나는 소프트웨어나 정보기술이 prior art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독창성 검증을 진정으로 거치지 않은 특허가 존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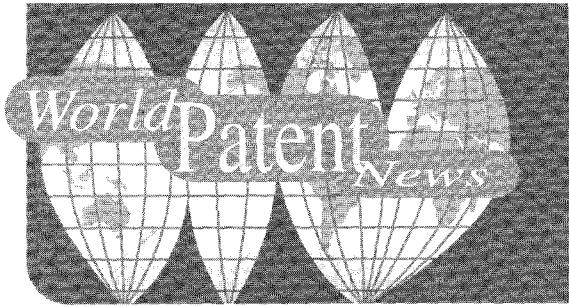
특허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기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터넷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코드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상업적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다른 곳의 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등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는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ITAA의 Pearl은 말하고 있다.

출처 : 해외과학기술동향

## 특허 번역문을 네트로 제공

인터넷을 통해 특허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네트(green net)는 게이오, 와세다 대학, KDD, 오끼전기공업과 공동으로 특허의 해석·평가 정보나 해외 특허의 번역문을 네트로 제공하는 조직을 6월에 설립한다. 특허의 문장은 전문가 이외에는 이해하기 어려워 기업의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산·학이 연대하여 알기 쉬운 언어로 가공하여 유통을 촉진한다. 6월부터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300건의 번역문의 제공을 개시한다.

설립하는 조직은 「특허가치평가콘소시움」이다. 게이오 대학은 이공학부, 와세다대학은 국제정보통신연구센터가 참가한다. 양 대학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특허의 해석·번역문 작성을 담당한다. KDD, 오끼전기는 기술의



해석이나 평가에 참여한다.

KDD는 서버의 운용·관리 등의 기술적인 면을 지원한다. 오끼전기도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 구축 면에서 지원한다. 작년 말까지 미국에서 인정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중 전자상거래관련 200건, 금융관련 100건의 번역문을 6월에 제공한다.

개이오대학 이공학부가 이미 번역에着手하였다. 산학의 전문가를 모은 콘소시움 속에 평기위원회를 설치하여 금년 가을에는 번역문을 작성하여 제공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취득된 정보기술관련의 특허를 영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해외로의 정보제공도 금년 내에 개시한다. 2-3년 후에는 특허의 유용성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등급을 매겨 가치 평가정보로서 제공한다. 이용기업에 패스워드를 제공하여 키워드나 특허번호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요금은 년간 약 천만 엔의 정액제를 계획 중이다. 특허를 전자결제, 암호, 보안등의 기술분야로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검색할 수 있다.

기업이 특허를 이용하는 경우 원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기술을 숙지한 컨설턴트가 중개하는 것이 현실이다. 해석·번역문을 사용하면 특허관련 부문 이외의 사람이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특허의 유통이 활발해지면 대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의 기술이전도 증가할 것이다.

[출처 : 해외과학기술동향]

## DNA 칩 특허신청에서 일본은 미국에 뒤지고 있다

[출처 : 일본경제신문 : 2000년 04월 22일]

유전자해석의 도구로서 주목을 모으는 「DNA 칩」에 대해서 일본은 특허 면에서도 미국에 뒤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특허조사회사의 조사로 밝혀졌다. 미국의 훼어필드 리소스 인터내셔널社의 조사에서, 90-98년 9년간에 미국에서 성립된 DNA칩 관련의 중요특허 124건 중 미국의 기업이나

발명가가 출원한 특허는 81건(65%)을 차지하고 일본은 7건(8%)에 머물렀다. 유럽에서는 33건(26%) 있었다.

또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 성립된 49건에서도 미국이 27건으로 반수 이상을 차지해 유럽 16건, 일본 6건으로 미국의 우세가 부각되었다. 미국의 출원은 우선 단독 출원을 한 후 개량이나 확장을 더해 새롭게 추가 출원하는 케이스가 많고 단독출원이 많은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하나의 특허를 중심으로 주변기술을 망라해서 특허로서 제압해 가는 미국기업의 전략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한다. DNA 칩은 인공유전자의 단편을 유리 기판에 많이 붙인 기구로 환자의 혈액 등의 시료 중에 특정의 유전자가 존재하는가 어떤 기를 간단히 조사할 수 있다. 실용화에서 미국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다.

[출처 : 해외과학기술동향]

## WTO, 캐나다 특허제도 변경 요구

[출처 : <http://pubs.acs.org/subscribe/journals/cen/> : 2000년 05월 15일]

국제 무역기구(WTO) 분쟁 조정 위원회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문제에 관한 중재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미국은 캐나다가 “지적 재산권의 무역관련 사항에 대한 동의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WTO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이 동의 내용은 조약 가맹국들이 1996년 1월1일 이후로 출원되는 특허에 대하여 20년간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캐나다는 1989년 8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보호권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승인 기간을 17년으로 제한하였다. 미국 무역 대표부의 Charlene Barshefsky는 이러한 결정으로 3년이라는 갭이 발생하고 이 기간 동안

에 해당하는 특허 수가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160,000건 이상에 달하여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고 WTO 규정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는 언급을 하였다. 결국 WTO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캐나다는 자국의 특허권 보호기간을 연장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제약 분야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자국의 제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 판정에 대하여 항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출처 : 해외과학기술동향

는 레코드 회사들은 MP3 닷콤과 타임워너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씨그램의 유니버설 뮤직 그룹, 그리고 버틀즈만 AG의 뮤직지사인 BMG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록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에 대해, 오리지널 카피를 소유하기 전까지는 마이 MP3 닷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는 할지라도, 저작권 보호법을 어겼느냐 하는 것이다. MP3 닷콤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른 많은 음악들이 실제로는 레코드 라벨 계약을 하지 않는 음악인들한테서 나오는 것이다. - (cjwfwhd@tmic.tit.ac.kr)

출처 : 한국경제

##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문제

연방 법원은 뮤직 데이터베이스 툴이 불법이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그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레코드 회사들 간에 논쟁이 계속 있어 왔었다.

미국 연방 법원은 MP3 닷컴이 저작권 보호법을 어겼다고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아무런 컴퓨터나 가지고 음악을 저장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판정은 1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내려졌는데, 이 소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레코드 라벨에 관한 것으로써, 80,000개 이상의 카피라이트 된 앨범이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뮤직 다운로딩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문제였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중 일부분이며, 이러한 레코딩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사용자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어떤 컴퓨터에서도 앨범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었다. 뉴욕의 남부지역 지방 법원 판사인 제드 라코프는 MP3 닷콤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하고 서비스를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을 하고 있

## EU, 특허제도 일원화

앞으로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를 따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 특허가 인정되는 등 EU의 특허제도가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각 나라마다 별도로 특허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도 많이 들었다.

진 스펠링 미국 대통령직속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25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1일 포르투갈 쿠엘루스에서 열리는 미-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브루스 레만 워싱턴 지역재산권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유럽에서 특허를 따려면 관련자료를 여러나라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등 EU의 특허제도가 기업활동의 상당한 장애물이 되었다”며 “IBM 인텔등 첨단기술업체들과 자동차 제약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EU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등이다.

출처 : 해외과학기술동향